

도로의 종류 (변경없음)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없음)	130호선
공사의종류 (변경없음)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백교, 백관교)량하고 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채도로 등과 간섭되는 토공구간의 개조설, 운서역 보행도로 개설		
구간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57-4(장로3-505호선)와부터 운북동779-4(대로1-501 호선)와 까지(30.4km)		
공사시행장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2008년 10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3년 06월 13일 (변경) 2013년 12월 31일
이유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및 영종하늘도시 입주민의 운서역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도모를 위한 보행도로 개설			
주 : 구간단어는 자명 및 지반을 기입할 것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는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가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하여 어린이 동학차량 안전대책을 위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동학차량의 자가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및 승차정원 완화(안 제103조제6호)
- 현행 규정상 자가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목적용 위하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여 동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로 정함
 - 자가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의 등·하교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동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합조 대응교동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충교동과, 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설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69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벤처·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간의 자본·인수로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간 인수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 제9조)
- 관계기업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
- 나. 「상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의견권 없는 주주에 대한 규정이 제370조에서 제344조의3으로 변경
- 다.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발원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8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T25,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GT7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xT304-10xGHB119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